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01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문진석・이재관・한정애

장종태 · 김동아 · 이연희

김종민 • 박용갑 • 김문수

윤호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47조 사기의 죄를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로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는 불법의 정도가 심하여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재산에 몰수·추징의 특례를 인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재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저지른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 을 추가하여 전세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도 몰수·추징의 특례가 적 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법률 제 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경우 및"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및"으 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3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			
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			
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	가		
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			
조, 제347조의2 및 제351			
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			
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 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 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 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 범죄"라 한다)로 한정한 다]와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 조, 제347조의2 및 제351 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 로 한정한다)

나. (생 략) 4.·5. (생 략)

<u>경우,</u>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
차계약을 이용하여 범행한
<u>경우 및</u>

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